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인증등급을 설정하고,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에 인증등급을 신설하고,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서식 수정(안 별지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내용에 인증등급을 추가하여 등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변경(안 별지 제3호의2,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접수기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 제3호의3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 6. 10.부터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이내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실무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F A X	전자우편
②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③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④ 공사시공자	회사명(대표자명)		면허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⑤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⑥ 신청시설물	시설물명			
	소재지 주소			
	시설물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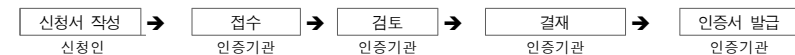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수수료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현행	개정안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 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 보강 지원 신청)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 -----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